

#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구 미 시

#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가. 중기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24.11)」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경북도)가 조성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참여하여 도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 나.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6회계연도(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개요

#### (1) 대상기관

기관명	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일	20. 3. 31.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3~5층
설립목적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 모태펀드, 해외VC 글로벌펀드, 지역혁신펀드 등 운용

#### (2) 출자예정액 : 15억원

- 25년 4.5억원(30%), 26년 6억원(40%), 27년 4.5억원(30%)

(3)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투자조합 개요

- (1) 조 합 명 :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경북 모펀드)
- (2) 운 용 사 : 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 (3) 출 자 자 : 모태펀드, 포스코, 농협, 경북도, 구미·포항·경산·경주
- (4) 결 성 액 : 1,011억원(시비 15억원)

구 분	출자자	출자금(억원)	비고	
경북 모펀드	모태펀드	600		
	포스코홀딩스	250		
	농협	30		
	한국벤처투자	11		
	경북도	60		
	기초지자체 (60)	구미시	15	
		포항시	15	
		경산시	15	
경주시		15		
합계		1,011		

\* 최종 결성시점, 총 결성액 및 출자자 변경될 수 있음

(5) 존속기간 : 2025년 ~ 2037년(12년)

(6) 투자대상 : 경북 도내 스타트업 및 혁신 벤처기업(12대 국가전략기술\*)

※ 12대 국가전략기술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첨단로봇 ⑪차세대통신 ⑫양자

(7)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방시대 벤처펀드」 선정 (‘25. 2. 27.)
- 모펀드 조합 결성 및 1회 출자금 납입 (‘25. 10.)
-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한국벤처투자) (‘25. 12.)

(8) 기대효과

-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 필요성**

- (1)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2)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지역 혁신 벤처기업 발굴
- (3)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0조, 제71조제4항
- (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6억) \* 출자예정액 15억원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벤처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

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

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기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선정 지자체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라 연도별 출자금 비율 책정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450	600	450	1,5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시비	450	600	450	1,500
합계	450	600	450	1,500

### 5. 부대의견 : 없음

### 6. 작성자 :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 임형석(☎480-6052)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권 미 영
	팀 장	전 기 훈
	담 당 자	임 형 석 (480-6052)